노인인권 보호지침

노인종합복지법인 우림

우 림 요 양 원

노인인권 보호지침

- 목 차 -

제1장 노인인권 보호 ····· 3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3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3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4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4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4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4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4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5
-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5
제2장 노인학대 유형과 증상 ····· 6
- 노인학대의 유형 ····· 7
-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 8-12
제3장 노인학대 예방 ····· 13
제4장 노인학대 대응방법 ····· 13-14
노인학대방지포스터 ····· 15

노인 권리 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1. 노인 권리 보호

대표자, 직원, 어르신 가족, 지역사회 등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어르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1)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2) 어르신이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어르신이 어르신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기관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7)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4)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5) 기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기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1)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 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기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마.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3)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아.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기관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4)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5)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차.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2)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기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어르신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노인 학대 유형과 증상

가.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의 2와 제 39조의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 적 학 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 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등을 하는 행위
방 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 기 방 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잘린상처,찔린상처,생채기, 출혈,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상처 (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 출혈한 흔적 ▪ 화상 (담배불, 로프 등 마찰로 생긴 화상 등) ▪ 영양부족,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멍듬 ☑ 꼬집힘 ☑ 찢김 ☑ 머리카락 뽑힘 ☑ 묶은 흔적 ☑ 감금 ☑ 골절 ☑ 인대손상 ☑ 화상 ☑ 호흡곤란 ☑ 경뇌막 혈종 ☑ 뇌손상 ☑ 의식장해 ☑ 기타 ☑ 부종 ☑ 할퀌 ☑ 물어뜯김 ☑ 경미한 출혈 ☑ 목졸린 흔적 ☑ 유해약물투여 흔적 ☑ 삠(접질림) ☑ 탈골 ☑ 고막파열 ☑ 복부출혈 ☑ 두개골 골절 ☑ 신체떨림(수전증) ☑ 뇌사 ☑ 사망

2)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유아처럼 다룬다. ▪ 가족 · 친구로부터 격리.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 ·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업신여긴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 · 무례한 태도를 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무기력하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고의적 따돌림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제한 ☑ 사용공간 제한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쫓아냄

3)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 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 ▪ 언어, 행동, 시각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 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남녀구별 필요공간의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속옷이 찢어짐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성병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한 유언장을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 (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수당 등)을 가로채거나,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 갈취 ☑ 동산 갈취 ☑ 부동산 갈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유언장 허위 작성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연금·생계급여 등 수입의 착취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의무 불이행 ☑ 의사표현불가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 노인의 재산 갈취 ☑ 기타

5) 방 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 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병원에 데려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기, 기저귀 교환,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한다. ▪ 노인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또는 부서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항상 같은 의복이거나 더럽고 찢어진 옷,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침구가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 제공 거부 (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 (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 신변 청결·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 식사 거부 ☑ 의도적 보호 거부로 문제 발생 ☑ 치료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 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 반 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곳에 버림 ☑ 반감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3. 노인 학대 예방

가.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나. 기관은 시설 내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어르신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라.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마.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바.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노인 학대 대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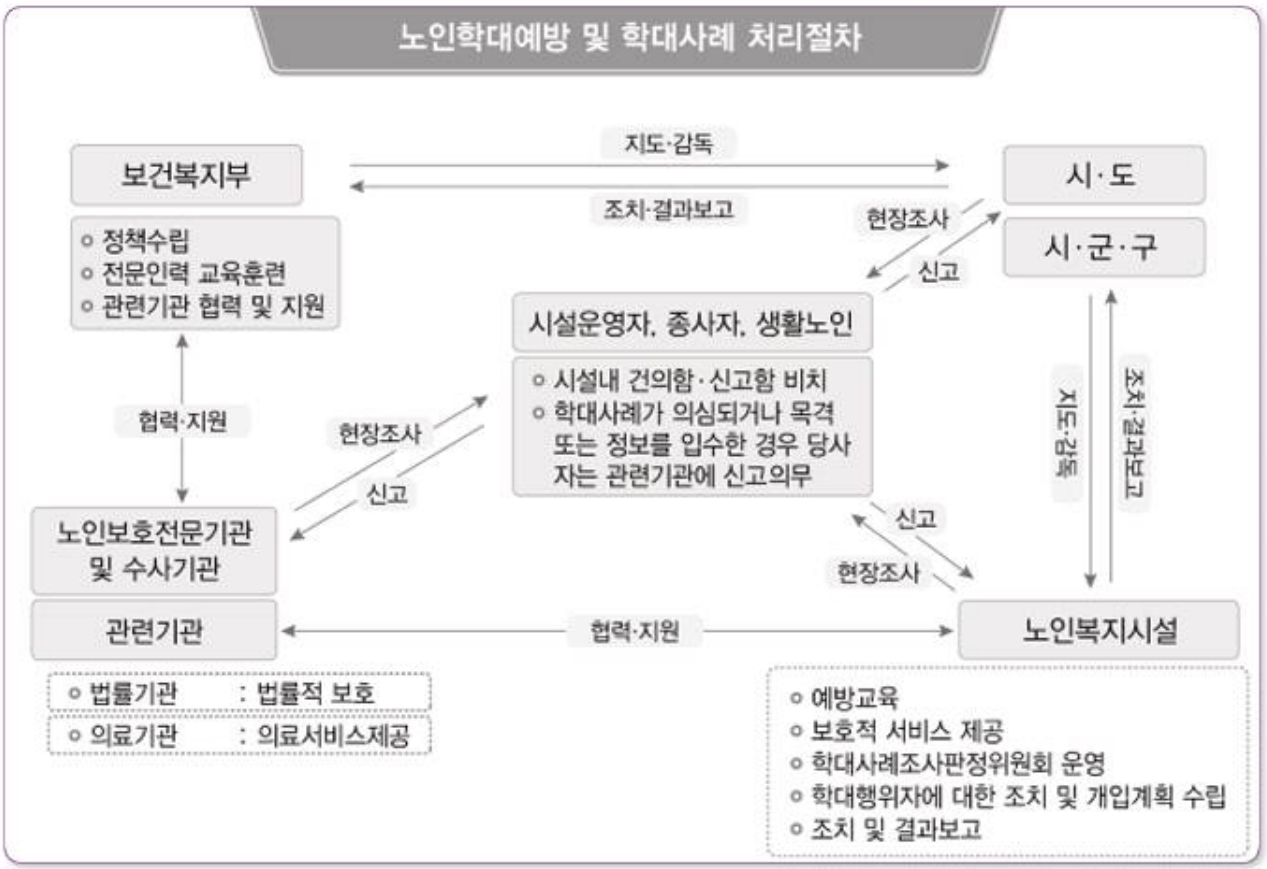

가. 기관은 어르신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어르신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기관은 어르신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어르신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관 종사자는 생활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라. 모든 기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어르신은,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바. 생활어르신이 동료 생활어르신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 계약의사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 기관의 생활어르신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자.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차.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 유기 및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타.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 ·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